

##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000호

〈봉은사 판전〉을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보호구역을 조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7월 일  
서울특별시장

#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

## 1.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개요

- 지정 종별 및 호수 :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25호
- 지정 명칭 : 봉은사 판전(奉恩寺 板殿)
- 문화재 지정 대상 : 판전 건물 1동, 토지 1필지(총 210.7㎡)

지정대상	지번	지적(㎡)	지정 수량·면적(㎡)	소유자
봉은사 판전	강남구 삼성동 73	-	1동	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
토지 (판전 점유 부분)	"	61,428.0	210.7	
	합계	총 1필지	210.7	

- 보호구역 지정 대상 : 토지 총 4필지(총 65,675.3㎡)

지번	지적(㎡)	지정면적(㎡)	소유자
강남구 삼성동 73	61,428.0	60,873.0	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
강남구 삼성동 73-1	1,722.2	1,722.2	
강남구 삼성동 73-2	2,765.4	2,765.4	
강남구 삼성동 73-3	314.7	314.7	
합계	총 4필지	65,675.3	

※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4호 “봉은사 선불당”의 보호구역과 같음

○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도면 : <별첨1> 참조

○ 지정 사유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“봉은사 판전(奉恩寺 板殿)”은 1856년에 창건되고 1878년 중수된 단층 맞배집 목조 건축물로, 봉은사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.
- 건물 내에 봉안되어 있는 ‘경기좌도광주수도산봉은사화엄판전신건기(京畿左道廣州修道山奉恩寺華嚴板殿新建記)’ 및 ‘화엄판전번와축장중수록(華嚴板殿燔瓦築牆重修錄)’과 2012년 수리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‘화엄판전상량문(華嚴板殿上樑文)’ 등을 통해 창건 및 중수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.
- 본 건물은 경관을 보관하는 장경각(藏經閣)인 동시에 예불을 드리는 불전(佛殿)으로, 경관보관 및 예불 기능을 병용하기 위하여 독특한 창호 구성을 갖추는 등 건축적 희소성이 있다.
- 정면 어칸 처마에 걸려 있는 현판에는 ‘판전(板殿)’ 두 글자가 양각되어 있는데 추사 김정희(1786~1856)의 글씨이며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되어 있다.
- 상기의 사유로 “봉은사 판전(奉恩寺 板殿)”은 ‘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’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.

## 2.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개요

○ 지정종별 :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4호

○ 지정명칭 : 봉은사 선불당(奉恩寺 選佛堂)

○ 문화재 지정 현황 : 선불당 건물 1동, 토지 1필지(총 344.3m<sup>2</sup>)

지정대상	지번	지적(m <sup>2</sup> )	지정 수량·면적(m <sup>2</sup> )	소유자
봉은사 선불당	강남구 삼성동 73	-	1동	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
토지 (선불당 점유 부분)	”	61,428.0	344.3	
	합계	총 1필지	344.3	

○ 보호구역 조정 대상 : 토지 총 4필지(총 65,675.3m<sup>2</sup>)

조정 전				조정 후			
지 번	지 적 (단위:m <sup>2</sup> )	지정면적 (단위:m <sup>2</sup> )	소유자	지 번	지 적 (단위:m <sup>2</sup> )	지정면적 (단위:m <sup>2</sup> )	소유자
강남구 삼성동 73	61,428.0	61,083.7	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	강남구 삼성동 73	61,428.0	60,873.0	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
강남구 삼성동 73-1	1,722.2	1,722.2		강남구 삼성동 73-1	1,722.2	1,722.2	
강남구 삼성동 73-2	2,765.4	2,765.4		강남구 삼성동 73-2	2,765.4	2,765.4	
강남구 삼성동 73-3	314.7	314.7		강남구 삼성동 73-3	314.7	314.7	
합계	총 4필지	65,886.0		합계	총 4필지	65,675.3	

○ 문화재 및 보호구역 조정 도면 : <별첨1> 참조

○ 조정 사유

-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4호 “봉은사 선불당”의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“봉은사 판전”이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계획됨에 따라,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조(정의) 1항 3호에 의거 기존 보호구역 지정면적에서 “봉은사 판전”의 점유면적을 제외함

### 3. 문화재 지정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

○ 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

- 문화재보호법 제74조(준용규정) 제2항,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(허가사항)·제21조(허가기준)·제22조(허가사항의 취소)·제24조(신고사항)·제25조(행정명령 및 조치), 제49조(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)·제50조(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),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(허가신청)·제19조(경미한 행위의 범위)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

○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규정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함)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함. 다만,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, 일반묘역,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,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함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(02-2133-2630)  
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첨부 - 1. <봉은사 판전>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도면

**별첨 1**

**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도면**



범례	명칭
	봉은사 판전
	봉은사 선불당
	보호구역

구분	소재지	지적(m <sup>2</sup> )	지정면적(m <sup>2</sup> )
문화재	강남구 삼성동 73 ㄱ	61,428.0	210.7
	강남구 삼성동 73 ㄴ	61,428.0	344.3
보호구역	강남구 삼성동 73 1	61,428.0	60,873.0
	강남구 삼성동 73-1 2	1,722.2	1,722.2
	강남구 삼성동 73-2 3	2,765.4	2,765.4
	강남구 삼성동 73-3 4	314.7	314.7
	총계	총 4필지	65,675.3